#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

소관부서 : 농업기술센터(농업정책과)

제정 2023·12·22 조례 제205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·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유수면"이란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(이 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.
- 제3조(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)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(이하 "점용료·사용료"라 한다)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(이하 "점용·사용"이라 한다)의 허가(이하 "점용·사용허가"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.
  - 1. 법 제8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,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  - 2.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
    - 가. 준설토(浚渫土)를 매립·성토(盛土)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: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
    - 나.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
  - 3.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
    - 가.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·배 수펌프의 용량

###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

- 나.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: 인수관·배수관의 지름
- 4.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: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돌·모래의 시장가격
- 5.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: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·돌·모래의 시장가격
- ② 제1항에서 "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"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·하천·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.
-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·사용 계획 및 점용료·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·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점용료·사용료의 징수)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 료·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.
  - 1. 점용·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: 점용·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·사용료를 해당 점용·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.
  - 2. 점용·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: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·사용료는 점용·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·사용료를 점용·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, 그 이후의 점용료·사용료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,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
  - ② 시장은 점용료·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.
  - ③ 점용료 · 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.
  - ④ 시장은 점용료·사용료를 내야하는 자가 점용료·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·사용료의 100분의 3

-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·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·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- 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점용료·사용료" 는 "가산금"으로 본다.
- ⑧ 시장은 점용료·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제5조(점용료·사용료의 분할납부)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·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, 연간 점용료·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·사용허가(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할 때에는 점용·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·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・사용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제2항의 점용료·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
  - ⑤ 제4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점용료·사용료"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.
- 제6조(과오납된 점용료·사용료의 정산) ① 점용료·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

### 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

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.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- 제7조(점용료·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 - 1.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감면
  - 2.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 감면
- 제8조(점용료·사용료의 조정) 시장은 동일인(법 제16조에 따라 권리·의무를 이전받 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·사용하 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·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·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.
- 제9조(변상금)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  - ③ 변상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점용료·사용료"는 "변 상금"으로 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1]

# 점용료·사용료의 산정방식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산정방식(단위 : 연간)
1. 잔교(棧橋: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)·호안(기슭·둑 침식 방지시설)·소형선 부두(야적장을 포함한다)·방파제·건축물, 그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(관로 매설을 포함한다)를 위한 점용·사용[하천·도랑 부지(溝渠)를 주거용으로 점용·사용하는 경우는제외한다]	<ul> <li>가.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 격의 100분의 3. 다만, 「도로법」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(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5로 한다.</li> <li>나.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(교각 면적은 제외한다), 해저터널(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)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로 한다.</li> <li>다. 케이블카,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・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5로 한다.</li> </ul>
2.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	기, 거기시어 9 스
점용·사용	#* #* #* #* #* #* #* #* #* #* #* #* #* #

- 준설토(매립용·성토용 또 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
- |3. 흙·돌·모래·자갈 또는│ 가.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기도| 지사 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 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. 다만, 해당 조사가격 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격 평균치의 100분의 30
  - 1)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
  - 2)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
  - 3)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 격의 산술평균치
  - 4)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
  - 나.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 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 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(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 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)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ㆍ시(특별자 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• 군 • 구에 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
    - 1)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ㆍ사 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
    - 2)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·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
  - 다. 흙 · 돌 · 모래 · 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 · 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

4.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 를 위한 점용·사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. 다만,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25까지 낮출 수 있다.
5.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 한 점용·사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. 다만,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점용·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.5로 한다.
6. 「광업법」 및 「해저광 물자원 개발법」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・사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. 다만, 광물채취행위가 어장·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,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·돌·모래·자갈을 「골재채취법」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.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 정한 목적 외의 점용·사 용	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점 용·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	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.5

#### 비고

- 1. "토지가격"이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, 점용료·사용료 부과·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개별공시지가가 결정·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- 2. 점용·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.
- 3.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, 흙·돌·모래·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(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를 말하며,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를 포함한다)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.
- 4. 점용료·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 단위로 계산한다.
- 5. 점용면적에  $1 \text{ m}^2$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총 점용면적이  $1 \text{ m}^2$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6. 시장이 점용료·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·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# [별표 2]

# 점용료·사용료의 조정 산식(제8조 관련)

점용료·사용료의 증가율	납부할 점용료·사용료
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10/100+(증가율-10/100)×3/10}]
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13/100+(증가율-20/100)×1/10}]
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16/100+(증가율-50/100)×6/100}]
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19/100+(증가율-100/100)×3/100}]
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22/100+(증가율-200/100)×1/100}]
500퍼센트 이상	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+[전년도 점용료·사용료 ×{25/100+(증가율-500/100)×5/1,000}]

### [별지 제1호서식]

<u>점용</u> :	료·사용료 납입고지서(부본)	<u>점용료·사용료 납입고지서</u>			:			<u>통지서</u>				<u>영수증서</u>				
제호	년도 세입 납	:	제호	년도 세입		납		제호		년도 세입	납	제호		년도 세입		납
장		:	장				:	장				장				
관		:	관				:	관				관				
항		:	항				:	항				항				
목		:	목				:	목				목				
주관	취급		주관			취급						세입				
일금 위	년 월 일까지		일금 위	년 월 일	일까지			일금 위오	나 같이 <sup>(</sup>	영수하였.	으므로 통지합	관 계 일금	와			
 	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 ·		 니다		부하시기	바랍		니다				위외	와 같이	영수합니	다.	
				년 월	일				년	월	일		년	월	일	
받은 에 [	년 월 일 이천시장 세입징수관 ①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고지서를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다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 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			이천시	장	인			(	이천시장 세입징=		_		은행		

268mm×190mm(일반용지 50g/m²(재활용품))

## [별지 제2호서식]

첨부서류

없 음

공유수면 [] 점용료·사용료 분할납부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/	나항을 읽고 작성하	시기 바랍니다.	[] = 0	_			(앞면)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	20일	
ו בו בו	성명				생년월일		
신청인	주소				전화번호		
	1	개산의 표시 ②	3	신청면적 (m²)	신청사유	분납방법	비고
	가. 점용료,					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						1년에 ( )회	
신청내용						1년에 ( )회	
	나. 변상금의	경우				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						( )년에 ( )회	
「이천시	공유수면 점-	용료·사용료	징수 조례」	제5조 또는	제9조에 따라 위	공유수면의 ([	]점용료·
사용료, [ ]	변상금)을(를)	분할납부하려	려고 합니다.				
			,1 ~1	1.41		년 월	일
•	<b>-1</b> -2 -2		신청	1인		(서명 또	=는 인)
이	천 시 장	귀하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수수료

없 음

### [별지 제3호서식]

(앞면)

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								
대상자	① 성	명			② 주민등록번	호		
네성사	③ 주	소			④ 연 락 처			
⑤ 위반행위	⑤ 위반행위							
⑥ 부과내용	-							
구	구 유 수 면			점유면적	부과기간	변상금	비고	
소 재 지	지 목	지 조	d (m²)	(m²)	19/12	[예상](원)	7, 32	

「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9조에 따라 귀하가 점용·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·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고,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·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·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만일,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.
  - 2.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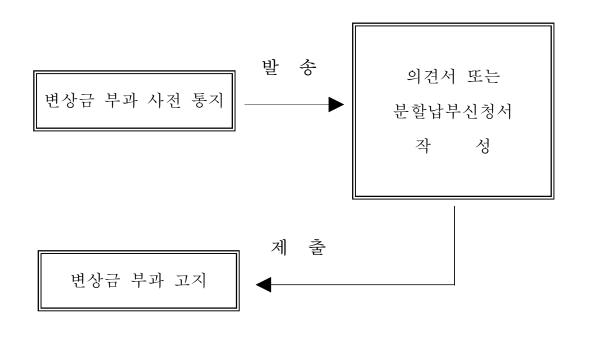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이 천 시 장 (인)

(뒷면)

※ 변상금: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
 산정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공유
 수면을 점용·사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

처 리 기 관	점유·사용자
이 천 시 장	

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##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

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의견이 있어 「이천시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항 목	통 지 내 용	의 견

<그 밖의 의견>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